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19일, 장종태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2.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회의(2025. 11.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5. 11. 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장종태의원)

현재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절차, 평가 및 시정명령·지정취소 사유 등에 관한 현행법상 규정은 없음. 이에 따라 교육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시정을 권고하는 데 그쳐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제41조의4·제56조의2 신설 및 제56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근거 마련 등)** 현행법 제41조[1]에서는 대통령령[2]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고 있고, 제36조제1항[3] 각 호에 따른 영업을

---

1)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⑦ (생 략)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식품위생교육의 대상)**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자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자(식용얼음판매업자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
6.제21조제6호의 식품보존업자
7. 제21조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자
8.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9.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

3)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면서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4]에서는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하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법 제59조제1항[5]에 따른 동업자조합 또는 법 제64조제1항[6]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식약처 고시인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식품위생교육대상자와 10개의 위생교육기관을 정하고 있고, 식약처 예규인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교육 실시기관에 대하여 교육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규정[7]을 두고 있음.

---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식품위생교육기관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및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하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로 한다.
② 식품위생교육 및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은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으로 한다.
③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의 운영과 식품위생교육 및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5) **「식품위생법」 제59조(설립)** ① 영업자는 영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또는 식품의 종류별로 동업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6) **「식품위생법」 제64조(설립)** ① 식품산업의 발전과 식품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7)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제2조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평가)** ① 식품관련 영업자 및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한 위생교육기관(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위탁 또는 공동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이 위탁 또는 공동으로 교육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의 범위, 업무수행 절차, 방법 및 소요경비 지급 등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 간 계약에 따른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기관에 대하여 교육시간 및 내용, 교육교재, 교육비, 회계 등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 식품위생교육기관별 교육대상 >

교육기관명		교육대상(총 21개)	교육기관 지정년도
①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제조·판매업 등 16개 업종	1987년
동업자조합	②대한제과협회	제과점	1993년
	③한국외식업중앙회	일반음식점	1987년
	④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단란주점업	1993년
	⑤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유흥주점업	1993년
	⑥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휴게음식점, 식품자동판매기	1993년
	⑦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압착식용유업	2011년
	⑧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추출가공업	2011년
	⑨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떡류가공업	2011년
식품위생교육 전문기관	⑩한국외식산업협회	일반음식점 등 3개 업종(회원에 한함)	2014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그런데 교육 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및 그 요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바, 어떠한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되는지 알 수가 없고,[8] 행정처분의 성격을 지닌 '지정취소'는 그 요건과 근거를 법률에 두어야 함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1조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정취소 시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각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각 개정안에 따라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이 법률에 마련되면, 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지정기준에

8) 한국식품산업협회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별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이 없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8개 동업자조합은 식약처고시인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에 따라 교육계획 및 예산 서류 등을 심의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지정취소 요건은 부재한 실정임. 또한 식약처장이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한 한국외식산업협회의 경우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 기준지침」에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법적 효력이 없는 지침서에 불과함.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식품위생교육기관 운영을 도모하고 식품위생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장종태 의원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인력·시설·설비 보유 현황 및 활용도, 교육과정 운영실태 및 교육서비스의 적절성·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식약처예규)에 따라 매년 교육 실시기관에 대하여 교육시간 및 내용, 교육교재, 교육비, 회계 등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9]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평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위생교육 대상자가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식품위생교육기관 스스로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각 개정안은 제41조의3을 신설하여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장종태의원안은 같은 조 제7항에서, 강선우의원안은 같은 조 제6항에서 각각 지정 절차 등 세부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

9)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제2조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평가) ① 식품관련 영업자 및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한 위생교육기관(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위탁 또는 공동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이 위탁 또는 공동으로 교육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의 범위, 업무수행 절차, 방법 및 소요경비 지급 등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 간 계약에 따른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기관에 대하여 교육시간 및 내용, 교육교재, 교육비, 회계 등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현행법 제41조제8항[10]을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내용, 시간,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현행법 제41조의2제9항[11]도 교육 실시 기관을 삭제하는 등 조문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아울러 김도읍의원이 각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38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각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행 및 의원 발의안 비교 >

구분	현행	김도읍의원안 (제3138호)	장종태의원안 (제6715호)	강선우의원안 (제7231호)
지정주체	식약처장	식약처장 시·도지사	식약처장	식약처장
교육기관	총리령에 위임 - 한국식품산업협회 - 동업자조합 - 식약처장이 지정·고시하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법률에 규정 -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법률에 규정 - 동업자조합 - 한국식품산업협회 -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법률에 규정 - 동업자조합 - 한국식품산업협회 -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업종별 비영리법인
지정기준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 기준		
지정절차	- 한국식품산업협회, 동업자조합: 없음 -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침에 따라 지정 심의	지정 절차 및 평가 방법 등 총리령으로 위임		
준수사항	-	-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처분 근거	-	업무정지 명령, 지정취소 근거 명시		

10)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1) 제41조의2(위생관리책임자) ①~⑦ (생 략)
⑧ 위생관리책임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 관계 기관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정안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평가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평가를 통하여 개선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식품위생교육 수준 제고를 위한 것으로 타당함.

□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 마련 등)현행법 제56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12)]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13)]에서는 법 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

---

12) 「식품위생법」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ㆍ실시기관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 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

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면서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조에서는 '교육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기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 이에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식생활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38조[14]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

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4) 「식품위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73호, 2025.1.3. 시행)
제38조(교육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 및 교육시간 등 교육실시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08년 8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식품위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79호) 제19조의2[15] 에 따라 (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와 (사)대한영양사협회에 각각 위탁하였고, 2013년 3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식약처로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교육기관별 교육대상 등>

교육기관명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비	교육기관 지정년도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집단급식소 종사 조리사	6시간	집합 또는 온라인	35,000원	2008
(사)대한영양사협회	집단급식소 종사 영양사	6시간	집합(3)+온라인(3) 또는 온라인(6시간)	35,000원	2008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등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 개정안은 조리사 및 영양사를 대상으로 하는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평가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평가를 통해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식품

15) 「식품위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79호, 2008.2.29. 시행)
제19조의2 (교육의 위탁)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 및 교육시간 등 교육실시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생교육 수준 제고를 통하여 국민의 식생활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사)대한영양사협회:

- 개정안은 식품위생교육기관 중 동업자조합과 한국식품산업협회는 교육기관으로 명시하여 지정하면서 (사)대한영양사협회와 (사)한국조리사협회는 교육실시기관 명기에서 제외하여 특정단체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등 위생교육기관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음.

-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위생법」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에서 위임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교육시행규정 및 교육계획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정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정취소 등 별도 규정 신설이 불필요함.

□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 현재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을 전담하는 전문교육기관(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대한영양사협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엄격한 감사 및 통제 하에 교육운영을 하고 있음.

- 개정안과 같이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위탁교육기관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확장시켜 지정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의 전문교육기관 진입을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

관의 지정기준보다 훨씬 광범위하여 형평성에 어긋나고 복수의 교육기관 허가 및 운영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의원)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